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및 자료제출명령 도입〉

-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46호)
- 허 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79호)
-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20호)
-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24호)
-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05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개 요	1
1.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안	1
2. 허 영의원 대표발의안	2
3.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안	4
4.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안	6
5. 권성동의원 대표발의안	8
II . 검토의견	10
1. 개정안의 배경	10
2. 입증책임 전환	14
3.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22

I. 개요

1.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74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4. 7. 15.
- (3) 회 부 일 : 2024. 7.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한 경우,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해당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인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 사실 입증에 필요한 관련 정보는 제조업자 등 일방에만 편중되어 있고, 일반 소비자가 사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며, 정보에 대한 해석·적용 또한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피해자가 소송 수행 시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임.

이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되,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2. 허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77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6.

(3) 회 부 일 : 2024. 7.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 및 해당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된 제조물의 경우,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추정을 위한 사항들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제조물과 관련된 자료에 접근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고,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국

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및 제9조 신설 등).

3.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82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채현일의원 등 32인
- (2) 제 안 일 : 2024. 7. 17.
- (3) 회 부 일 : 2024. 7. 18.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차량의 급발진 사고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피해자가 결함 및 손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제조물 특성상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극적 운용,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손해의 증명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되어야 할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상대방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4. 서왕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82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왕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17.

(3) 회 부 일 : 2024. 7.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입증책임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경우 결함 등의 추정 요건조차 피해자가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소비자 피해 구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제조물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

면,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 신설).

5. 권성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90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권성동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7. 18.
- (3) 회 부 일 : 2024. 7.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원리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개정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현행 규정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배경

□ 「제조물책임법」은 「민법」 제750조¹⁾ 일반불법행위의 특별법으로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음.

○ 「제조물책임법」 제정 시 입증책임²⁾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동법 제8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³⁾’라는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①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②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③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했음.

□ 그러나 제조물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고 제조과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 사이의

1)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 한 쪽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 함.

3)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당해 규정의 적용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당사자가 그 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7년도에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완화 방식으로 개정되었음.

□ 이러한 입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기술이 집약되는 제조물의 경우에는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 시 그 피해사실 입증이 매우 어려워 추가적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자동차 급발진⁴⁾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건수는 2015년 이후 총 340건에 달하나 사고가 자동차 급발진에 의한 것임을 피해자가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급발진 의심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된 사건이 1건도 없는 상황⁵⁾임.

4) 자동차급발진이라 함은 통상 차량이 정지 또는 매우 낮은 출발 속도에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높은 출력이 쾅음과 함께 나타나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함.(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급발진 사례조사 결과보고」)

5) 현재 진행중인 소송으로서 2심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있음.(서울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8가단 5211948 판결, 서울지방법원 2020.8.11 선고 2019나 54506 판결)

구분	1심	2심
판단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호인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로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이나 급발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감정축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조업자인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건수 ＞

(단위: 건)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50	57	58	39	33	25	39	15	24	340

※ 자동차리콜센터에 ‘급발진’ 의견으로 신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이는 급발진 발생 여부를 의미하지 않음

※ 자료: 국토교통부

- 이에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일정한 제조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고,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음.

<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

구 분	주 제	요건 및 내용
정준호의원안	입증책임 전환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 추정자료 제출 시
허영의원안	입증책임 전환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채현일의원안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서왕진의원안	입증책임 전환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권성동의원안	입증책임 전환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 추정자료 제출 시

2. 입증책임 전환(정준호의원안, 허영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권성동의원안)

- 정준호의원안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 허영의원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 서왕진의원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공급할 당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

조의3 신설).

- 권성동의원안은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현 행	정준호의원안	허영의원안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생략) <u><신설></u>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u>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u>

	<u>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u> <u>다만,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u>해당 제조물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u> 2. <u>피해자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하지 않은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u> 3. <u>피해자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u>	<u>지 아니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u>
현행	서왕진의원안	권성동의원안
<신설>	제3조의3(자동차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제3조의3(자동차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특례)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u>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공급할 당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u>	<u>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	--

-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피해자가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하여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입증책임 전환 개정 내용 ＞

구분	대 상	요 건
정준호 의원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에 의한 손해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
허영 의원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에 의한 손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
서왕진 의원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의한 손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
권성동 의원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에 의한 손해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

□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보의 취득, 경제적 측면 등에서 제조업자에 비해 절대적 약자인 피해자가 제조물로 인한 손해를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⁶⁾에서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고, 손해가

6)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증명책임 완화규정은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으나, 과중한 증명책임의 부담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 특히 증명책임 완화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과 결함과 손해 간 통상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해당 제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과학적 기술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출처 : 제조물책임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 30권 제4호 (2020년 12월) 145~187면, 권오상)

결함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각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허영의원안, 서왕진의원안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집약 제조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결함의 부존재 입증 등 소송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입증책임 분배의 ‘공평의 이념’ 원칙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정준호의원안, 권성동의원안의 경우 피해자가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영상자료, 기록물 등)’를 제출하면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바, 인정되는 영상자료, 기록물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자동차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7)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7) 제74조의2(손해배상)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자동차관리법」 역시 결함과 손해의 추정 원칙을 도입하여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바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한 개정안의 내용을 「자동차관리법」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관련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는 전통적인 증명책임분배⁸⁾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판례를 통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를 폭넓게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영상기록, 목격자 진술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제조업자가 결함 없음을 해명하도록 하고 있음.⁹⁾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④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규모
6.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산상태
7.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하여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8) 당해 규정의 적용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당사자가 그 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

< 제조물책임법 입증책임 관련 외국 입법례 >

구 분	관련 조문 내용
미국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¹⁰⁾	- 결함의 추정 규정(제3조) · (a) 통상 제조물 결함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이고, · (b) 사고가 오로지 제조물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존재하고 있던 제조물 결함 이외의 원인의 결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면, 특정한 결함에 관한 입증이 없어도 원고가 입은 피해는 그 제조물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시점에 존재하고 있던 결함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
일본	증명책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피해자인 원고가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물책임법은 모든 제조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특정 제조물에 한정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제조물 간 형평에 반할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에 관한 한·미 간 비교연구, 무역학회지, 제43권 제3호, 2018.6., 하충룡·김은빈

10) 리스테이트먼트는 주법(州法)의 통일화를 위한 운동으로서, 선례로 정착된 판례의 요점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구속력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권위적인 법원으로, 판례나 입법에 영향력이 큼.

3.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서왕진의원안)

- 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및 서왕진의원안은 제조물 책임의 손해배상책임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결함의 증명,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서왕진의원안
<신 설>	제3조의3(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7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결함의 증명,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	제3조의4(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결함의 증명,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

현 행	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서왕진의원안
	<u>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u>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	<u>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나 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현 행	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서왕진의원안
	<u>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u> <u>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u>	<u>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u> <u>④ 법원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u> <u>1.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u> <u>2. 자료 제출을</u>	<u>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u> <u>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u>

현 행	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서왕진의원안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u>신청한 당사자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u>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해당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자료제출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 행	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서왕진의원안
	<u>제3조의4(비밀유지 명령) ① 법원은 제3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u>	<u>명령을 위반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법원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제출되어야 할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다.</u> <u>제7조의4(비밀유지 명령)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u>	

현 행	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서왕진의원안
	<u>유를 모두 소명한</u> <u>경우에는 그 당사</u> <u>자의 신청에 따라</u> <u>결정으로 다른 당</u> <u>사자(법인인 경우</u> <u>에는 그 대표자를</u> <u>말한다), 당사자를</u> <u>위하여 소송을 대</u> <u>리하는 자, 그 밖</u> <u>에 그 소송으로</u> <u>영업비밀을 알게</u> <u>된 자에게 그 영</u> <u>업비밀을 그 소송</u> <u>의 계속적인 수행</u> <u>외의 목적으로 사</u> <u>용하거나 그 영업</u> <u>비밀에 관계된 이</u> <u>항에 따른 명령을</u> <u>받은 자 외의 자</u> <u>에게 공개하지 아</u> <u>니할 것을 명할</u> <u>수 있다. 다만, 그</u> <u>신청 시점까지 다</u> <u>른 당사자(법인인</u> <u>경우에는 그 대표</u> <u>자를 말한다), 당</u> <u>사자를 위하여 소</u>	<u>유를 모두 소명한</u> <u>경우에는 그 당사</u> <u>자의 신청에 따라</u> <u>결정으로 다른 당</u> <u>사자(법인인 경우</u> <u>에는 그 대표자를</u> <u>말한다), 당사자를</u> <u>위하여 소송을 대</u> <u>리하는 자, 그 밖</u> <u>에 그 소송으로</u> <u>인하여 영업비밀</u> <u>을 알게 된 자에</u> <u>게 그 영업비밀을</u> <u>그 소송의 계속적</u> <u>인 수행 외의 목</u> <u>적으로 사용하거</u> <u>나 그 영업비밀에</u> <u>관계된 이 항에</u> <u>따른 명령을 받은</u> <u>자 외의 자에게</u> <u>공개하지 아니할</u> <u>것을 명할 수 있</u> <u>다. 다만, 그 신청</u> <u>시점까지 다른 당</u> <u>사자(법인인 경우</u> <u>에는 그 대표자를</u> <u>말한다), 당사자를</u>	

현 행	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서왕진의원안
	<u>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	<u>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	

현 행	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서왕진의원안
	<u>밀이 해당 소송</u> <u>수행 외의 목적</u> <u>으로 사용되거나</u> <u>공개되면 당사자의</u> <u>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u> <u>가 있어 이를</u> <u>방지하기 위하여</u> <u>영업비밀의</u> <u>사용 또는 공개</u> <u>를 제한할 필요</u> <u>가 있다는 것</u> <u>② 당사자는 제1</u> <u>항에 따른 명령</u> <u>(이하 “비밀유지</u> <u>명령”이라 한다)</u> <u>을 신청하려면 다</u> <u>음 각 호의 사항</u> <u>을 적은 서면으로</u> <u>하여야 한다.</u> <u>1. 비밀유지명령</u> <u>을 받을 자</u> <u>2. 비밀유지명령</u> <u>의 대상이 될</u> <u>영업비밀을 특</u> <u>정하기에 충분</u> <u>한 사실</u>	<u>밀이 해당 소송</u> <u>수행 외의 목적</u> <u>으로 사용되거나</u> <u>공개되면 당사자의</u> <u>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u> <u>가 있어 이를</u> <u>방지하기 위하여</u> <u>영업비밀의</u> <u>사용 또는 공개</u> <u>를 제한할 필요</u> <u>가 있다는 것</u> <u>② 당사자는 제1</u> <u>항에 따른 명령</u> <u>(이하 “비밀유지</u> <u>명령”이라 한다)</u> <u>을 신청하려면 다</u> <u>음 각 호의 사항</u> <u>을 적은 서면으로</u> <u>하여야 한다.</u> <u>1. 비밀유지명령</u> <u>을 받을 자</u> <u>2. 비밀유지명령</u> <u>의 대상이 될</u> <u>영업비밀을 특</u> <u>정하기에 충분</u> <u>한 사실</u>	

현 행	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서왕진의원안
	<u>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u> <u>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u> <u>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u> <u>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u> <u>제3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조의4제1항에 따른</u>	<u>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u> <u>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u> <u>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u> <u>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u> <u>제7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7조의4제1항에 따른</u>	

현 행	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서왕진의원안
	<u>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u> <u>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u> <u>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u> <u>④ 비밀유지명령</u>	<u>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u> <u>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u> <u>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u> <u>④ 비밀유지명령</u>	

현 행	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서왕진의원안
	<u>을 취소하는 재판</u> <u>은 확정되어야 효</u> <u>력이 발생한다.</u> ⑤ <u>비밀유지명령</u> <u>을 취소하는 재판</u> <u>을 한 법원은 비</u> <u>밀유지명령의 취</u> <u>소신청을 한 자</u> <u>또는 상대방 외에</u> <u>해당 영업비밀에</u> <u>관한 비밀유지명</u> <u>령을 받은 자가</u> <u>있는 경우에는 그</u> <u>자에게 즉시 비밀</u> <u>유지명령의 취소</u> <u>재판을 한 사실을</u> <u>알려야 한다.</u> <u>제3조의6(소송기록</u> <u>열람 등의 청구</u> <u>통지 등) ① 비밀</u> <u>유지명령이 내려</u> <u>진 소송(모든 비</u> <u>밀유지명령이 취</u> <u>소된 소송은 제외</u> <u>한다)에 관한 소</u> <u>송기록에 대하여</u> <u>「민사소송법」</u>	<u>을 취소하는 재판</u> <u>은 확정되어야 효</u> <u>력이 발생한다.</u> ⑤ <u>비밀유지명령</u> <u>을 취소하는 재판</u> <u>을 한 법원은 비</u> <u>밀유지명령의 취</u> <u>소신청을 한 자</u> <u>또는 상대방 외에</u> <u>해당 영업비밀에</u> <u>관한 비밀유지명</u> <u>령을 받은 자가</u> <u>있는 경우에는 그</u> <u>자에게 즉시 비밀</u> <u>유지명령의 취소</u> <u>재판을 한 사실을</u> <u>알려야 한다.</u> <u>제7조의6(소송기록</u> <u>열람 등의 청구</u> <u>통지 등) ① 비밀</u> <u>유지명령이 내려</u> <u>진 소송(모든 비</u> <u>밀유지명령이 취</u> <u>소된 소송은 제외</u> <u>한다)에 관한 소</u> <u>송기록에 대하여</u> <u>「민사소송법」</u>	

현 행	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서왕진의원안
	<u>제163조 제1항의</u> <u>결정이 있었던 경</u> <u>우에, 당사자가</u> <u>같은 항에서 규정</u> <u>하는 비밀 기재부</u> <u>분의 열람 등의</u> <u>청구를 하였으나</u> <u>그 청구 절차를</u> <u>해당 소송에서 비</u> <u>밀유지명령을 받</u> <u>지 아니한 자가</u> <u>밟은 경우에는 법</u> <u>원서기관, 법원사</u> <u>무관, 법원주사</u> <u>또는 법원주사보</u> <u>(이하 이 조에서</u> <u>“법원사무관등”이</u> <u>라 한다)는 같은</u> <u>항의 신청을 한</u> <u>당사자(그 열람</u> <u>등의 청구를 한</u> <u>자는 제외한다.</u> <u>이하 제3항에서</u> <u>같다)에게 그 청</u> <u>구 직후에 그 열</u> <u>람 등의 청구가</u> <u>있었다는 사실을</u>	<u>제163조 제1항의</u> <u>결정이 있었던 경</u> <u>우에, 당사자가</u> <u>같은 항에서 규정</u> <u>하는 비밀 기재부</u> <u>분의 열람 등의</u> <u>청구를 하였으나</u> <u>그 청구 절차를</u> <u>해당 소송에서 비</u> <u>밀유지명령을 받</u> <u>지 아니한 자가</u> <u>밟은 경우에는 법</u> <u>원서기관, 법원사</u> <u>무관, 법원주사</u> <u>또는 법원주사보</u> <u>(이하 이 조에서</u> <u>“법원사무관등”이</u> <u>라 한다)는 같은</u> <u>항의 신청을 한</u> <u>당사자(그 열람</u> <u>등의 청구를 한</u> <u>자는 제외한다.</u> <u>이하 제3항에서</u> <u>같다)에게 그 청</u> <u>구 직후에 그 열</u> <u>람 등의 청구가</u> <u>있었다는 사실을</u>	

현 행	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서왕진의원안
	<u>알려야 한다.</u> ② <u>법원사무관등</u> <u>은 제1항의 청구</u> <u>가 있었던 날부터</u> <u>2주일이 지날 때</u> <u>까지(그 청구 절차</u> <u>를 밟은 자에 대</u> <u>한 비밀유지명령</u> <u>신청이 그 기간</u> <u>내에 이루어진 경</u> <u>우에는 그 신청에</u> <u>대한 재판이 확정</u> <u>되는 시점까지를</u> <u>말한다) 그 청구</u> <u>절차를 밟은 자에</u> <u>게 제1항의 비밀</u> <u>기재부분의 열람</u> <u>등을 하게 하여서</u> <u>는 아니 된다.</u> ③ <u>제2항은 제1항</u> <u>의 열람 등의 청</u> <u>구를 한 자에게</u> <u>제1항의 비밀 기</u> <u>재부분의 열람 등</u> <u>을 하게 하는 것</u> <u>에 대하여 「민사</u> <u>소송법」 제163조</u>	<u>알려야 한다.</u> ② <u>법원사무관등</u> <u>은 제1항의 청구</u> <u>가 있었던 날부터</u> <u>2주일이 지날 때</u> <u>까지(그 청구 절차</u> <u>를 밟은 자에 대</u> <u>한 비밀유지명령</u> <u>신청이 그 기간</u> <u>내에 이루어진 경</u> <u>우에는 그 신청에</u> <u>대한 재판이 확정</u> <u>되는 시점까지를</u> <u>말한다) 그 청구</u> <u>절차를 밟은 자에</u> <u>게 제1항의 비밀</u> <u>기재부분의 열람</u> <u>등을 하게 하여서</u> <u>는 아니 된다.</u> ③ <u>제2항은 제1항</u> <u>의 열람 등의 청</u> <u>구를 한 자에게</u> <u>제1항의 비밀 기</u> <u>재부분의 열람 등</u> <u>을 하게 하는 것</u> <u>에 대하여 「민사</u> <u>소송법」 제163조</u>	

현 행	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서왕진의원안
	<u>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u> <u>제9조(벌칙) ① 국</u> <u>내외에서 정당한</u> <u>이유 없이 제3조</u> <u>의4제1항에 따른</u> <u>비밀유지명령을</u> <u>위반한 자는 2년</u> <u>이하의 징역 또는</u> <u>2천만원 이하의</u> <u>벌금에 처한다.</u> <u>② 제1항의 죄는</u> <u>비밀유지명령을</u> <u>신청한 자의 고소</u> <u>가 없으면 공소를</u> <u>제기할 수 없다.</u>	<u>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u>	

- 개정안들은 현행법에 따른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명령제도보다 강화된 수준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보완하고 균형적인 증거수집을 보장하려는 것임.

□ 법원이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결함 또는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에 산정에 필요할 경우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를 신청한 당자사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라 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하여 제출된 영업비밀의 경우 법원의 판단의 자료로 쓰이는 용도 이외에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므로,

유사임법체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허법」과 같이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비밀유지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함께 규정하여 영업비밀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 자료제출명령제도와 현행 제도 비교 >

항목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자료제출명령 (공정거래법)	자료제출명령 (특허법)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대상	제조물 결함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소송	모든 민사소송
주체	손해 주장 당사자		침해 주장 당사자	모든 당사자
객체	상대방 당사자 한정			상대방 당사자 및 제3자 포함
범위	자료	자료(자진신고 관련 자료 제외)	자료	문서(서증)에 한정
요건	해당 결함의 증명,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① 당사자가 소송 에서 인용 ② 신청자에게 인도· 열람할 사법상 권리 ③ 신청자의 이익 또는 법률관계 관련
거부 사유	정당한 이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민소법 제304조~제306 조) 및 증언거부권(민소 법 제314조) 등
거부 사유 예외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			-
비밀 유지 명령	O (허영의원안, 채현일의원안)	O	O	-
·위반시 처벌	O (허영의원안)	O	O	-
명령 불응 효과 (당사 자)	①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②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참고로 유럽연합의 개정된 제조물책임지침은 제조물책임소송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제조업자 등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 EU 제조물책임지침 >

구 분	조문 내용
EU 제조물책임지침 제10조	- 입증책임(제10조) 1. 회원국은 청구인이 제품의 결함, 발생한 피해 및 해당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보장해야 함. 2.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u>제품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u>. · (a) <u>피고가 제9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u> · (b) 청구인이 해당 제품이 부상자가 입은 피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필수 제품 안전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 (c) 청구인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사용 중 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품의 명백한 오작동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3.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발생한 손해가 해당 결함과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종류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 추정 4. 제9조에 따라 증거가 공개되고 사건의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결함 또는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제품의 결함을 추정함. · (a) 청구인이 특히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 또는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입증하는 데 과도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 · (b) 청구인이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결함과 손상 또는 둘 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4. 피고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추정을 반박할 권리가 있음.

11)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 이슈와논점, 제2092호, 2023.5, 최은진·임병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 제재 조항이 함께 규정된 허영의원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5